

제101회(폐회중) 산업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(부록)

거창군의회사무과

목 차

1. 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진정서 및 가조온천지구내 지방도포장건의서 검토보고 1 면

수해복구 공사에 따른 진정서 및
가조온천지구내 지방도 포장 건의서

거 장 군 의 회
(산업건설위원회)

수해복구공사에 따른 진정서

1. 진정내용

- 진정인 : 거창읍 상림리 69-2번지 정기욱
- 진정일자 : 2003. 7. 28.
- 진정내용
 - 고제면 공항리 답 841번지 2,710m³ (820평)
 - 위 토지가 태풍 루사로 인한 피해시 토지 윗부분에 있는 농로교에 이물질이 걸려서 물줄기가 바뀌므로 피해가 더 많이 발생하였음.
 - 교량으로 인하여 파여 나간 것을 태풍루사의 홍수로 인하여 물구비가 변경된 것으로 간주 물구비 커버를 잡은듯함.
 - 하천 상하 물구비와 현공사 다리발 간격이 균형적이지 못해 하천 중심 이탈, 다리발과 제방이 동쪽으로 편중되어 하천의 본질과 생리에 맞지 않는 실정
 - 하천 기본계획선에 의한 깃발이 꽃혀 있는 현장을 보면 하천폭이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 있으므로 반대편의 토지를 수용하여 균형을 맞추어야함.
 - 경남도에서 실정과 현장연구도 없이 하천공사를 하고있으므로 현장에 맞는 시공으로 본인의 토지가 너무 많이 편입되지 않도록 선처요망.

2. 검토결과

본 진정서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수해복구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로서 진정인의 토지가 너무 많이 편입되므로 현장여건을 파악하여 균형있게 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으로 집행부에서 현장확인을 하여 경남도에 이첩한 사항이므로 집행부에

서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코자함.

3. 집행부의 추진경과

○ 2003. 7. 29 민원회신 :

- 경남도에서 시공하는 공사이므로 도에 이첩 하였음.

- 하천 제방 축조선형은 하천기본계획에 의거 설계 및 시공을 하는 것으로 귀하의 토지구간은 수층부(물길이 굽이쳐 부딪치는 구간)로서 피해가 많았으므로 농경지 편입은 불가피한 사항이었음.

4. 참고자료

○ 진정서 및 집행부 회신공문사본 1부

가조온천지구내 지방도로포장 건의서

1. 건의내용

○ 건의자 : 가조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 조합장 최재규외 6인

○ 건의일자 : 2003. 7. 28..

○ 건의내용

- 수많은 주민이 불편을 겪고있는 온천지구내 지방도로를 포장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사항이 해결될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건의.

2. 검토결과

본 건의서는 가조온천지구토지구획정리조합에서 온천지구내의 미포장 지방도로로 인하여 주민이 불편을 겪고 있으므로 지역주민 불편해소 차원에서 미포장구간 225m를 포장하여 줄 것을 건의한 건의서로서 집행부에서 검토 시행하여야 할 사항이므로 집행부에서 처리토록 촉구하고 민원인에게 통보코자함.

3. 집행부의 추진경과

○ 건의서에 대한 검토중

4. 참고자료

○ 건의서 1부